

2010. 3. 8. (월) 10:00

제16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

심 사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 목 차 】

1.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 1
2.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 6
3.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 10
4.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 - - - - - 13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2. 1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2. 1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3. 2.
- 마. 의안번호: 제2010 - 8호

2. 개정이유

- 공립어린이 집(소만 어린이집)의 신규 설치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종사자의 임면사항 및 임용연령에 관한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는 한편 어린이 집 이용대상과 보육료 및 종사자의 근무규정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공립 어린이집 신규설치에 따른 명칭, 소재지 등 규정
(안 제2조 별표신설)
 - 명칭: 소만 어린이집(2008. 3. 6. 인가)

- 위치: 거창읍 대동리 소만 주공아파트 104동
- 나. 어린이집 이용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 다. 어린이집 입소순위 신설 및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자녀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급 또는 2급자 자녀, 3급 장애자로서 중복장애인 자녀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 일반가정 자녀
- 라. 보육료 결정 기준 변경(안 제6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 적용
→ 경상남도지사가 정하는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내에서 시설장이 결정 후 군수에게 신고
- 마. 종사자 임면규정 변경(안 제12조)
 - 시설장 및 종사자는 군수가 임면함 →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군수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한다
- 라. 종사자의 자격기준 삭제(안 제13조)
 -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에 의거 제한 규정 삭제
 - 시설장: 40세 이상 55세 이하

· 기타 종사자: 20세 이상 32세 이상

마. 종사자의 근무규정 변경(안 제16조, 제17조)

○ 종사자의 휴가(연가, 병가, 공가) 규정 → 거창군 지방공무원 조례로 일원화

○ 종사자의 휴직규정 → 지방공무원법 적용

바. 법령용어 순화기준에 맞게 조례상의 용어 등 정리

○ 의한, 각호의 1, →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

4.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 「영유아 보육법」 및 「고용정책 기본법」 등이 개정·운영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 「소만 어린이집」이 신규로 설치·운영(2008. 3. 6인가)됨에 따라 그 명칭과 위치 등을 조례상에 규정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 어린이 집 종사자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현행 군수가 모든 종사자를 임면하던 것을 시설장 및 교육교사는 군수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하도록 변경하였으며,

○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정·보완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제4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를
- 제4조(보육대상)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하기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으로 한다.
 1. 0세~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2. 거창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의한 12세이하의 저학년 아동. 으로 수정하고,
- 제6조(보육료) 보육료는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를
- 제6조(보육료) 보육료는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시설장이 수납액을 결정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고
- 제7조 제3항은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4조(보육대상)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하기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으로 한다</p> <p>1. 0세~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p> <p>2. 거창군 보육위원회(이하 "보육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의한 12세이하의 저학년 아동.</p>	<p>제4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p>	<p>제4조(보육대상)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하기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으로 한다</p> <p>1. 0세~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p> <p>2. 거창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보육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의한 12세이하의 저학년 아동</p>
<p>제6조(보육료)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 보육아동의 급식비, 시설의 관리,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표준보육단가로 한다.</p>	<p>제6조(보육료) 보육료는 경상남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6조(보육료) ----- ----- ----- 시설장이 수납액을 결정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7조(위탁운영)① (생략)</p> <p>②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위탁관리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③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수탁자의 보육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p> <p>④ (생략)</p>	<p>제7조(위탁운영)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따라 ----- ----- ----- 그 밖에 ----- ----- 따라 ----- -----.</p> <p>③ ----- ----- ----- 거창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위원회"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위탁운영)① (현행과 같음)</p> <p>② (수정안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2. 1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2. 1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3. 2.
- 마. 의안번호: 제2010 - 9호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개정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335호 2010. 1. 4) 및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촉진지구 외에 개별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보완(안 제3조)

- 간사변경: 지역경제담당 → 기업유치담당
 - 위촉위원의 임기 규정(제5항 신설): 2년
- 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확대
(안 제13조)
- 20명 초과 1명당 월50만원 → 월100만원까지
- 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확대
(안 제14조)
- 20명 초과 1명당 월10만원이상 50만원이하 지원
→ 월 100만원까지 지원
- 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확대(안 제19조)
- 국내기업에 대하여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입지지원, 고용, 교육훈
련, 시설보조금)
 -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현실화(기준강화)
 - 투자금액 15억이상, 신규채용 20명 이상 기업체
→ 투자금액 30억원 신규채용 20명이상 기업체
- 마. 도외 소재기업의 이전보조금 지원확대(안 제20조)
- 본점 과 공장을 동시에 이전하는 경우
 - 본점근무자 중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 → 본점 + 공장근무자
가 10명이상인 경우로 확대
- 바. 개별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20
조의3 신설)

- 수도권 이외 소재하는 기업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외에 입주하는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기업 지원기준에 준하여 지원
- 마. 법령용어 순화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함
- 이라함은, 하고자하는, 영위 → 이란, 하려는, 경영

4.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운영됨에 따라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맞게 조례내용을 일부개정 하였으며,
-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 및 수도권 외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입지지원금,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관련 규정이 없어 지원에서 제외됨으로서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었던 개별입주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2. 11.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2. 1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3. 2.
- 마. 의안번호: 제2010 - 10호

2. 개정이유

기업사랑 환경조성을 위해 시상하는 「최고 경영인상」 과 「최고 근로인상」 대상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관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최고 경영인상 및 최고 근로인상 수상 대상자의 자격 기준 강화(안 제6조, 제7조)
 - 최고 경영인상

- 현행: 1년이상 기업활동을 하고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기업의 대표자
- 개정: 신청일 또는 공고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자

○ 최고 근로인상

- 현행: 1년이상 기업활동을 하고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기업의 근로자
- 개정: 제조업체의 현장근로자로서 같은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

나. 관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 신설 및 확대(안 제16조의2, 제19조의2, 제19조의3)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경비 지원근거 마련함(신설)
-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시 제작비 지원 근거 마련함(신설)
- 보육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지원근거 마련함(신설)

다. 법령용어 순화기준에 맞게 조례상의 용어 등 정리

- 범위안에서, 지원받고자 하는 → 범위에서, 받으려는

4. 검토의견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의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로서 관내 기업체의 국내·외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또한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개발이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함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10. 2. 11.
- 나. 발 의 자: 임종귀 의원 외 1인
- 다. 회부일자: 2010. 2. 1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3. 2.
- 마. 의안번호: 제2010 - 12호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범질서 확립과 군민의 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책임 있는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치안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사회단체의 참여 활성화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총칙(제1장)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군 및 사회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제2장)

-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7조)
- 협위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안 제10조)
- 협의회 업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안 제11조)
-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다. 민간단체 및 범죄행위 피해자 지원(제3장)

- 참여 민간단체의 요건을 규정하고 보조금 등의 지원근거 마련 함(안 제15조, 제16조)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함(안 제17조, 제18조)

라. 시행규칙 및 부칙(안 제19조)

-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안 제16조, 안 제17조)은 2010. 7. 1일부터 시행함

4.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안은 범질서 확립과 군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 위하여 지역의 책임 있는 기관단체장들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지역치안 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사회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예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범죄로부터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안 제16조)과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 지원(안 제17조)사항은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시행 이전에 발생하는 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